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김석태
	담당부서 (과)	건설안전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권혁진		연락처	044-201-3579
	과장	서정관		이메일	kst8976@mail.go.kr

2022. 04. 25. 작성

건설정책국장 권혁진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												
	2.규제조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3.위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4.25. ~ 2022.6.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시공사는 건설현장에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경력이 없는 건설기술인을 품질관리자로 배치 가능하여 품질관리 소홀이 우려되어 품질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 광주 아파트 사고와 같이 건설현장에 품질관리자가 배치되었으나, 건설자재 등 품질시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품질관리계획, 현장 근로자 품질교육, 부적합한 자재 처리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바, - 품질분야에 일정부분 경력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토록 하여 양질의 건설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7.규제내용	○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질 경력을 추가 반영(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 3년, 고급 2년, 중급 1년)이 있는 건설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배치 기준 개선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및 품질관리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국 건설회사</td><td>약 10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8만)</td></tr><tr><td>이해관계자</td><td>품질관리자</td><td>약 10만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약 10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8만)	이해관계자	품질관리자	약 10만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국 건설회사	약 10만개 회사(종합 2만, 전문 8만)												
이해관계자	품질관리자	약 10만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품질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공사현장에 참여토록 하여 품질관리계획(시험) 수립, 레미콘 등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품질확인, 시험관리 및 공사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건설현장 부실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	-	-									
		피규제자 이외	-	-	-									
		정성분석	-	-	-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건설현장의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분야 건설기술인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일몰설정 불필요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u>해</u>	<u>당</u> <u>없</u>		<u>음</u>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 시공사는 건설현장에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경력이 없는 기술인을 품질관리자로 배치 가능하여 품질관리 소홀 우려
 - 실제 품질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을 품질관리자로 배치 필요
- 소규모 건설공사(100억 미만)는 품질관련 교육 및 훈련비 등 품질활동비 계상기준이 없어 중·대형공사에 비하여 품질관리 미흡
 - 기술인 인건비에 효율을 적용하여 품질관리활동비를 계상

나. 정부개입 필요성

- 토목 및 건축 등 건설중 시설물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 등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가 중요
 - 건설현장에 품질 경력이 부족한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 시 건설자재 등 품질시험관리 소홀 및 근로자에게 품질교육 등 미흡 우려
 - * 품질분야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 자재 적격품 확인, 시험·장비 관리 및 근로자 교육, 자체 품질점검 조치 등 역할
 - 품질분야에 일정부분 경력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양질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건설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22.3.)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다른 대안은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전국 SOC 건설회사	국민 대다수가 사용 및 거주하는 토목·건축물의 내구성 확보, 양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담당 건설기술인의 품질 경력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의견수렴은 없음	해당없음

3. 규제목표

- 공사규모별 품질 건설기술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및 철근 등 건설자재의 양질의 품질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등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함
-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일환으로 품질분야 건설기술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
- 품질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품질관리 계획(시험) 수립, 레미콘 등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품질확인, 시험관리 및 공사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건설현장 부실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적절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건설현장의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관련 품질분야 건설기술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일몰설정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품질 경력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품질관리 대상공사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등급에 품질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을 추가

⇒ 건설현장의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분야 경력이 있는 건설기술인이 공사현장에 참여토록 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 레미콘 등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품질확인, 시험관리 및 공사 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 담당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규제자가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설현장의 품질분야 건설기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품질분야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공사내역의 품질관리비에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당초 대비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레미콘 품질관리 전반의 문제점과 관행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건설업계, 제조업계 등과 T/F팀을 구성·운영('20.11~'21.01)
- 건설공사 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의 사용을 근절 및 양질의 품질 확보를 위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발표('21.3.)
-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22.3.)
 - (품질관리자) 직접적인 품질 관리 경력이 없는 기술인도 품질관리자로 배치 가능하여 품질 관리의 전문성 부족 우려
- (개선)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 3년, 고급 2년, 중급 1년)이 있는 건설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배치 기준 개선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검토

3. 종합결론

- 건축물 또는 토목 시설물 등의 내구성 향상 및 공용중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용 자재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등 모든 자재는 품질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품질분야 건설기술인이 이를 잘 관리하여야 함
 - 따라서, 품질분야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계획부터 시험관리, 근로자 교육 및 점검 등 품질 전 분야를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특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u>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u> 나. <u>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u>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u>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u> 나. <u>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u>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가. <u>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u>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